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55호 2016. 3. 29. (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 2143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 2144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 2145호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10
- 하동군 조례 제 2146호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하동군 조례 제 2147호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하동군 조례 제 2148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6-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장동*) 22
- 하동군 고시 제2016-3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1차) 23
- 하동군 고시 제2016-36호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26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367호 2015년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공고 27
- 하동군 공고 제2016-369호 화개장터 교통통제 시행 공고 26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455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9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43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보건소”를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주민행복과, 행정과, 민원과, 재정관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로

제2항제3호 중 “남해안개발과, 경제수산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산단조성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제11조(간사)제3항 중 “위원 중 연장자”를 “위원 중 최다선위원 중 연장자”로 한다.

제12조와 제13조를 각각 제13조와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4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될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② (생략) 1. (생략) 2. 기획행정위원회 : <u>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보건소</u>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 <u>남해안개발과, 경제수산물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11조(간사)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 및 간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u>위원 중 연장자</u>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p> <p><신 설></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주민행복과, 행정과, 민원과, 재정관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u> ----- -----. 3. ----- : <u>안전총괄과, 경제수산물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산단조성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u> -----.</p> <p>제11조(간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위원 중 최다선위원 중 연장자</u> ----- -----.</p> <p>제12조(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4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제13조 (생 략)</p>	<p>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될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p> <p>④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3조·제14조 (현행 제12조·제13조와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9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44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
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림 이병주 선생과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하동의 주
요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하동군이 건립한 문학관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이병주 문학관은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8에, 평사리문
학관은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9에 각각 둔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병주 선생과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문학관 관련 작가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수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문학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병주 선생”을 “이병주 선생과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하동의 주요 문학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선정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중 “이병주문학관 운영위원회”를 “하동문학관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8) 제 455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나림 이병주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병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위치) <u>문학관은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8에 둔다.</u></p> <p>제3조(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u>이병주 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u></p> <p>4. (생 략)</p> <p>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생 략)</p> <p>② <u>문학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알맞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u></p> <p>③ (생 략)</p> <p>제5조(관장) ① <u>문학관의 자료 수집·고증 평가·유물전시·안내, 이병주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관장을 둘 수 있다.</u></p>	<p>제명 : <u>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u>과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하동의 주요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하동군이 건립한 문학관의 효율적·체계적인 -----</u> -----..</p> <p>제2조(위치) <u>이병주 문학관은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8에, 평사리문학관은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9에 각각 둔다.</u></p> <p>제3조(업무)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이병주 선생과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 문학관 ----- 관련 ----- 작가의 -----</u></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문학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관장) ① ----- -----, <u>이병주 선생과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하동의 주요 문학인의 -----</u>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제6조(수탁자 선정)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선정 할 수 있다.</p> <p>제7조(협약체결 등) ①·② (생 략)</p> <p>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이 끝나는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p> <p>제20조(명칭)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u>이병주 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u>라 한다.</p> <p>제21조(구성) ①·② (생 략)</p>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에는 군의원 1명과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서 신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수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에 ----- ----- ----- -----.</p> <p>제7조(협약체결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20조(명칭) ----- <u>하동문학관 운영위원회</u>-----.</p> <p>제21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④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9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45호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하동군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지역문화”란 하동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하동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계층별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의 육성·지원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문화예술단체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12) 제 455 호

- ③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의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9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46호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를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하 동 군 공 보

(14) 제 455 호

제11조제1항 중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를 “「청소년 기본법」 제 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로 하고, “두터운 자여야 한다.”를 “두터운 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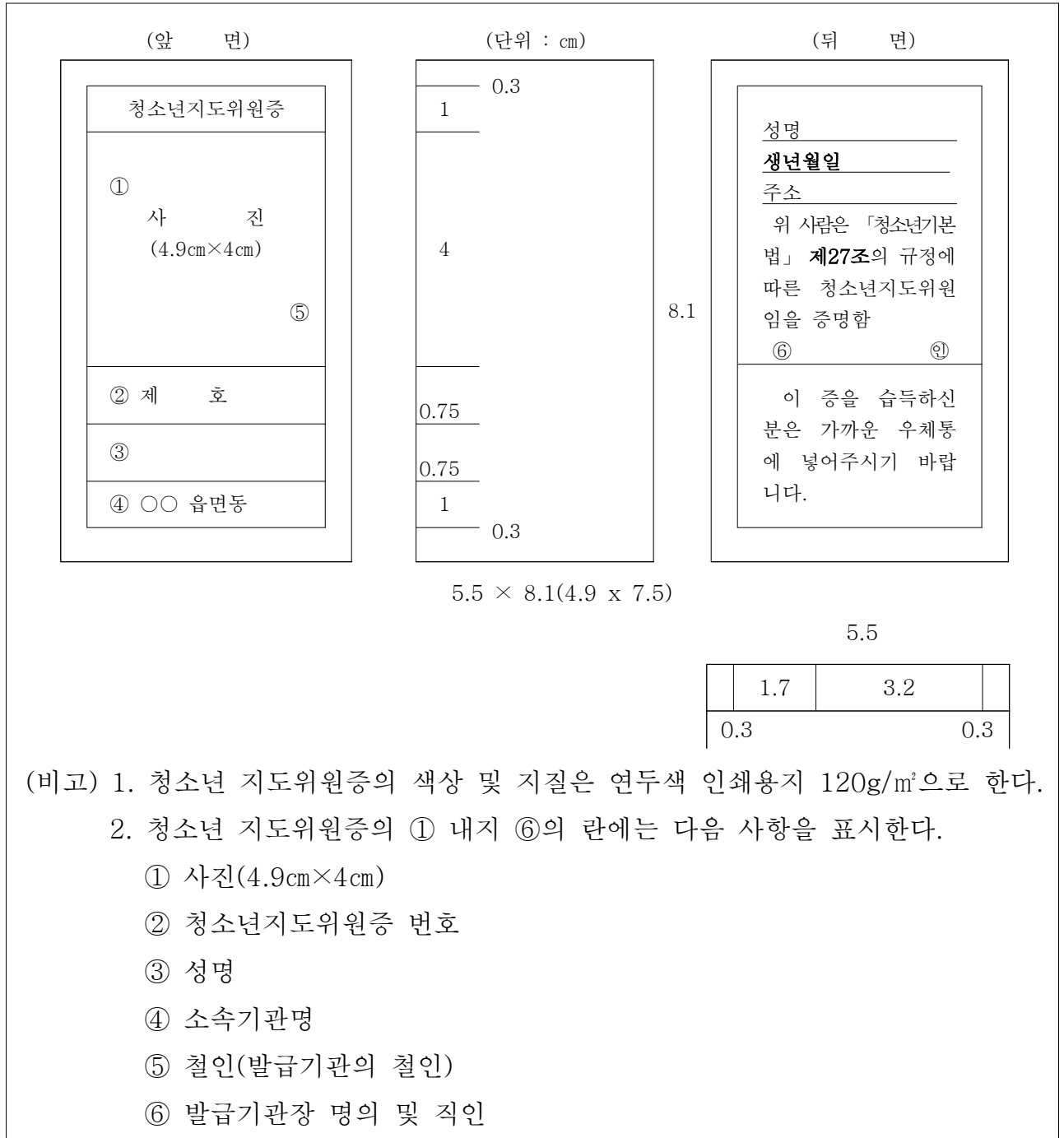
별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제22조”를 “제2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15조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하동군 <u>지방청소년위원회</u>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하동군 <u>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u></p> <p>제11조(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자는 <u>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u>여야 한다.</p> <p>② (생략)</p>	<p>하동군 <u>청소년육성위원회</u>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 ----- ----- <u>청소년육성위원회</u> ----- ----- ----- ----- -----</p> <p><u>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u></p> <p>제11조(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u>청소년 기본법</u>」 제21조에 따른 <u>청소년 지도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9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47호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학습관은”을 “평생학습관은”으로 한다.

제11조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제12조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읍·면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8) 제 455 호

1. 지역 평생교육기회 제공 및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2. 읍·면 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사업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중전의 제12조) 중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 중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p>5·6.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11조(기능) 평생학습관은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p> <p>6·7. (현행 제5호·제6호와 같음)</p> <p>제12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제13조(기능) 읍·면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지역 평생교육기회 제공 및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p> <p>2. 평생학습상담</p> <p>3. 읍·면 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p> <p>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사업</p> <p>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12조(운영)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p>제14조(운영) ---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 -----.</p>
<p>제13조(운영요원)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p>	<p>제15조(운영요원)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에는 ----- -----.</p>
<p>제14조 ~ 제16조. (생략)</p>	<p>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4조 ~ 제16조와 같음)</p>

(20) 제 455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29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48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휴양림 내에서 다음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
 2.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취사 또는 각종 물품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사항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버리는 사항
 4.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산림을 훼손시키는 사항
 5. 각종 시설물을 손상(파손, 파괴)시키거나 옮기는 사항
 6.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0조(입장의 제한)</u> <u>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u> 1. <u>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u> 2. <u>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u> 3. <u>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u></p> <p><u>제11조(행위제한)</u> ① <u>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u> 1. <u>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u> 2. <u>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취사 또는 각종 물품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u> 3. <u>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u> 4. <u>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산림을 훼손시키는 행위</u> 5. <u>각종 시설물을 손상(파손, 파괴)시키거나 옮기는 행위</u> 6. <u>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u> ② <u>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p>	<p><u><삭제></u></p> <p><u>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u> ① <u>이용자는 휴양림 내에서 다음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한다.</u> 1. <u>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u> 2. <u>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취사 또는 각종 물품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사항</u> 3. <u>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버리는 사항</u> 4. <u>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산림을 훼손시키는 사항</u> 5. <u>각종 시설물을 손상(파손, 파괴)시키거나 옮기는 사항</u> 6. <u>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항</u></p>

하 동 군 공 보

(22) 제 455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고 제 2016-34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장동엽	주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334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93-3(구), 인근지번 : 750(잡)		
	면적	53㎡		
	기간	2016. 4. 13. ~ 2021. 4. 12.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고시 제2016-3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11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22.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467 외 2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3.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455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25, 2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467	20160322	20070618	부춘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01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원목길 17	20160322	20070618	박석거리, 전나무동, 서재땀, 원목계 등의 마을을 합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130-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334	20160322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1180-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이정길 8	20160322	20070618	이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1016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이정길 56	20160322	20070618	이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21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가탄길 70	20160322	20070618	신선이 살면서 아름다운 여울에 낙시대를 담꼈다하 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72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도길 72-6	20160322	20070618	중도라는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932-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6-8	20160322	20070618	우리지역의 중심지를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중앙도로명 표시 원칙 적용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480-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91	20160322	2007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어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424-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대축길 22	20160322	20070618	큰 둔이 여서 대축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29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29-1	20160322	20070619	금성면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부여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29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29	20140124	20070619	금성면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미산길 37-3	20160322	20080402	뒷산이 눈썹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 동 군 공 보

(25) 제 455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86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49-23	20160322	20080402	미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76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수길 88-48	20160322	20080402	옥산의 물이 맑게 흐르므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111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산성길 57	20160322	20080402	뒷산에 오래된 산성이 있는데 이 산성아래 위치한 마을이 라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1075-4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35-20	20160322	20080402	횡천강을 끼고 있다하여 횡천강변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835-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114-14	20160322	20090302	북쪽에 있는 큰 고개라고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594-6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172	20160322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39-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795-14	20160322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422-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곤북로 1115	20160322	20090702	사천시의 곤명면과 하동군의 북천면의 첫자를 혼용하여 곤북로 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 391-16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281	20160322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04-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삼진강대로 2439-25	20160322	20090710	삼진강 지역명 사용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6. 3. 28.

하 동 군 수

1. 지정 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하동군 관내 전체 산림(48,756ha)
3. 화기물 소지 금지기간
 - 봄 철 : 2016. 3. 28. ~ 2016. 5. 15.
 - 가을철 : 2016. 11. 1. ~ 2016. 12. 31.
4. 지정년월일 : 2016. 3. 28.
5. 유의사항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하동군 산림녹지과(☎055-880-24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6-367호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의거 실시한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하 동 군 수

1. 목 적 : 자연재난 사전대비, 재해예방 및 저감방안 마련, 재난 훈련을 통한 위험관리 능력 향상 등
2. 공고분야 :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급
3. 문의전화 : 경상남도 하동군 안전총괄과(055-880-2253)

붙 임 : 2015년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공시현황 1부.

[붙임]

2015년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공시현황

시군구명	공 시 내 용					공시일	공시방법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 급			
경 상 남 도	소계: 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0.540	0.654	0.510	0.807	10	2016.03.25	게시판, 홈페이지, 시군구보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하동군 공고 제2016- 369호

화개장터 교통통제 시행 공고

화개장터 방문객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과 혼잡을 해소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를 만들하고자 「화개장터 차 없는 거리(전면통제) 및 일방통행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 3. .

하 동 군 수

1. 차 없는 거리 구간 : 화개장터 삼거리 ~ 보건지소 ~ 화개교(360M)

2. 운영기간 : 4. 1(금) ~ 4. 10(일), 5일간

- 벚꽃축제 시 : 4. 1(금) ~ 4. 3(일) 3일간
- 벚꽃 행락철 : 4. 9(토) ~ 4. 10(일) 2일간

3. 운영시간 및 대상

- 운영시간 : 09:00 ~ 18:00(4.1일은 14:00 ~ 22:00)
- 대 상 : 모든 차량(제외 : 순찰차, 쓰레기차 등 필수차량)

4. 문의사항 또는 의견 제출처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880-2392~4, FAX 880-2509)
- 하동군청 화개면사무소(055-880-6061~3, FAX 880-6058)